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2019. 6. 5.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안 제25조, 제28조)

###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2, FAX: 3396-8670, 전자우편 : [gigusarang@junggu.seoul.kr](mailto: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에 제12호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